

[별표 12-1] 환경성보장제도 적용제품 수입업자의 의무

○ 사전예방의무

1)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공표 의무

※ 1% = 10,000 ppm

유해물질 함유기준			공표기한 및 방법
전기·전자제품	납(Pb) 수은(Hg) 6가크롬(Cr <sup>6+</sup> ) 폴리브롬화비페닐(PBBs)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(PBDEs)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부틸벤질프탈레이트(BBP) 디부틸프탈레이트(DBP)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(DIBP)	동일물질 내 중량 기준(Wt) 0.1% 이하	-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- 공단 운영관리정보체계 ( E c o A S ; www.ecoas.or.kr)에 게재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(단, 공단에 통보)
	카드뮴(Cd)	동일물질 내 중량 기준(Wt) 0.01% 이하	
자동차	납(Pb) 수은(Hg) 6가크롬(Cr <sup>6+</sup> )	동일물질 내 중량 기준(Wt) 0.1% 이하	
	카드뮴(Cd)	동일물질 내 중량 기준(Wt) 0.01% 이하	

2)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공표 의무

연차별 재활용가능률		공표기한 및 방법
2009.12.31까지	2010.1.1부터	
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<b>85%</b> 이상 (단, 에너지회수 5%이하)	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<b>95%</b> 이상 (단, 에너지회수 10%이하)	-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- 공단 운영관리정보체계(EcoAS; www.ecoas.or.kr)에 게재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(단, 공단에 통보)

3) 재질·구조개선 지침 준수 및 평가대장 기록·보존의무

4) 재활용정보제공 의무

○ 사후관리의무(재활용의무)-전기·전자제품만 해당

1) 재활용의무 이행절차

<b>12월</b>	연도별 재활용목표량 고시	환경부장관	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
<b>1월</b>	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	공제조합, 의무생산자 → 한국환경공단	당해연도
<b>2월</b>	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	한국환경공단 → 공제조합, 의무생산자	당해연도
<b>1~12월</b>	재활용의무이행	의무생산자, 공제조합	당해연도
<b>4월15일</b>	제품별 전년도 의무이행 출고·수입실적 제출	의무생산자 → 한국환경공단	당해연도
<b>4월30일</b>	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	공제조합, 의무생산자 → 한국환경공단	재활용의무 이행 다음연도
<b>7월31일</b>	재활용부과금 고지	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	재활용의무 이행 다음연도
<b>8월31일</b>	재활용부과금 납부(재활용의무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%에서 130%까지 부과)		재활용의무 이행 다음연도

2)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

- 대 상 : 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
- 기 한 : 1월 31일(단,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, 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)

3) 재활용의무대상 전기·전자제품 출고·수입실적서 제출

- 전년도 전기·전자제품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15일까지 제출

**4)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**

- 대 상 : 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
- 기 한 : 4월 30일

**5)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**

-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